

(舉手表決)

내려주십시오.

그러면 出席 9名 中 賛成 2名, 反對 5名으로 否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그러면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意見을 採擇하고자 하는데 異議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.

○洪濤林委員 제가 한 얘기를 또 거듭하게 됩니다. 지금 제가 區廳에서 意見도 들었고 土地主의 意見도 들었고 또 여기다가 公園으로 해야지 建物을 지으면 안 된다는 民願도 제가 받았습니다. 그래서 자그마치 書類가 지금 이만큼입니다. 調査까지 다 했습니다. 그런데 兩面性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오늘 저로서는 이 案件에 대한 것은 城東區廳에서 兩面性이 없도록 즉, 土地主와 또는 城東區廳이 서로가 해결할 수 있는 方案을 모색해서 議案을 提出한 다음에 採擇을 하자, 그렇기 때문에 오늘로써 이 案件에 대해서 保留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.

○金錫判委員 지금 종전에 우리가 地方自治가 實現되기 前에 執行部의 態意대로, 또는 高位層의 意中, 말한마디에 따라서 私有財產이 많이 侵害를 받고 또 特惠를 받고 하는 그런 事例가 우리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. 지금 百日晴天, 대낮인데 지금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. 地方議會를 무엇때문에構成했습니까? 어떤 都市計劃이라는 허울에 씌여져 가지고 아무 對策도 없이 財產權이 被害되는 것, 이런 것은 이제는 마땅히 막아져야 되고 믿습니다. 그런데 지금 아까 局長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偽證을 한 것 같아요. 心證의 으로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. 왜 그러느냐, 이미 30年, 40年 前에 그보다 더 活用價值가 있는 垈地 또는 土地가 公園用地, 기타 都市計劃施設로 指定되어 가지고 막대한 侵害를 받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지금 怨聲을 사고 있는 此際에 오늘 저 案件을 公

園用地로 指定했다고 해서, 서울市豫算을 들여 가지고 저것만 어떻게 補償을 해 줍니까? 생각해 보세요? 분명히 나는 偽證이라고 봐요. 明年度에도 補償하기 힘들다고 저는 믿습니다.

또 아차산 내지 龍馬山公園이 公園속에 私有地로서 公園用地로 기이 指定된 土地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믿는데, 거기 안해 주고 저기 땅만 어떻게 補償을 해 주겠습니까? 앞으로 최소한 다른 都市計劃施設은 補償해서 買入하고 또는 補償을 충분히 해 가지고 施設을 하고 있는데, 公園만은 말이지요, 너무 量이 방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, 賦稅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, 補償해 줄 생각도 없고 公園擴張한다고 해서 우리豫算審議한 사실 있습니까? 그것 때문에 한껏 높습니까? 명년에라고 넣어야 됩니까? 이런 것은 좀 美觀이 좀 설사 보기싫더라도 과거의 先輩들이 執行을 잘못한 당연한 代價니까 이제는 이런 것은 안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. 좀 同僚委員들 다시 한 번 再考하셔서 保留해 가지고 次期에 신중히 檢討해서 通過했으면 좋겠습니다.

○委員長 禹靈仙 意見調整을 위해서 5分間만 停會를 하겠습니다.

5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(17時 10分 議會中止)

(17時 13分 繼續開議)

○委員長 禹靈仙 繼續開를 하겠습니다.

(議事棒 3打)

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지요?

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

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(參照)

도시계획시설(공원)변경 결정에 관한 의회
의견청취의 건

<p>제출년월일 : 1991. 12. 16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</p> <p>1. 개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치 : 성동구 광장동 381번지 일대 ○ 면적 : 기정 5,070,923㎡ 변경(증) 23,210㎡ 변경후 5,094,133㎡ ○ 시설명 : 용마자연공원 ○ 변경내용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 (추가) <p>2. 상경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지역으로 입상이 양호하고 자연풍치가 수려한 지역의 개발에 의한 경관 훼손 방지. <p>3. 참고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, 풍치지구 ○ 추가지정 요청지역 대부분이 사유지 (96.3%, 면적 22,360㎡) ○ 공람공고시 주민의견 : 3건 접수 - 공원지정 반대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안지역중 광장동 381-7호는 대법원 판결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되어 있고 기존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지역이며, - 당초 서울시 입안 공고에 비해 입안 면적이 현저히 축소된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객관성이 결여된 도시계획 입안으로 공원용지 입안철회 요망. - 반영여부 : 미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 자문결과 : 공원 지정으로 개발억제함이 바람직. ○ 우리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(91.5.17) 상정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제 불합리와 사유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선수립하는 등 종합적인 재검토토록 유보. ○ 공원과 검토의견 : 토지보상 대책을 수립한 후 공원 결정 요망. ○ 구의회 의견 청취결과 : 여러 사람의 공익을 위해 공원 결정함이 타당함.
<p>용마자연공원</p> <p>공원변경결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치 : 성동구 광장동 381번지 일대 ○ 시설명 : 용마자연공원 ○ 면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정 : 5,070,923㎡ 변경(증) : 23,210㎡ 변경후 : 5,094,133㎡ <p>정립회관</p> <p>공원주가지역</p>	